

— 김제시리.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 —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1. 17일 김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11. 25

다. 상 정 일 자 : 제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('97. 12. 22)
총무위원회에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총무과장 백길수)

가. 제 안 이 유

-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 시행('96. 7. 1)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○ 주 요 골 자

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중 “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”을 삭제함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

-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1조 ~ 제5조, 동법시행령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

4. 질의 및 답변

- 없 음

5. 심 사 결 과

- 총 11명위원중 8명위원이 참석,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